

『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, 잠재적 가치와 자원 등의 강점을 창의적 방법을 통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이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3조)
- 시장이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

전략과 정책을 수립·관리하도록 함(안 제3조 ~ 안 제6조)

-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등을 위한 범시민네트워크 및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7조 ~ 안 제15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치재창조 사업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가진 고유한 특성, 잠재적 가치와 자원 등의 강점을 창의적 방법을 통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도시브랜드 강화 및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범시민네트워크”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및 참여와 지원 등을 위해 시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고 한다)은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가치재창조 사업 기본계획

제4조(가치재창조 사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 기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5. 가치재창조 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가치재창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기본계획 보고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범시민네트워 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평가) ①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개인·부서·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3장 범시민네트워크

제7조(설치 및 기능) ①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 등을 위하여 범시민네트워크를 둔다.

② 범시민네트워크는 가치재창조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참여 및 지원을 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가치재창조 사업의 발전적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
3. 가치재창조 사업 발굴 및 효율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범시민네트워크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각종 시민·사회단체 대표, 지역 사회 원로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범시민네트워크에는 5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되,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

2. 시민·사회단체 대표 등 시민의 존경을 받고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

③ 범시민네트워크에 고문단을 두며, 고문단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전략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두며, 전략기획단은 인문, 역사, 문화, 관광, 사회, 체육, 시민사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⑤ 가치재창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두며, 추진협의회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·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대표로 구성한다.

제9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범시민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회의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대표의 결정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간사 등) ① 범시민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, 서기는 가치재창조 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.

제12조(분과위원회) 범시민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3조 (수당 등) 범시민네트워크 구성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

제14조(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지속적·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15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사무원을 수탁자가 임면한다.

제16조(준용) 센터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를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(정보제공 및 여론조사) ①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식,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